

스위스의 건축현상설계와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SIA102) 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역할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and Regulation governing architects' services and fees (sia102) by analyzing the role of architects in Switzerland

필자 : 임구성, 현 kimlim architekten eth sia 공동대표
by Lim, GuSung Dipl. Architekt ETH/SIA



중앙대를 졸업 후 동우건축과 삼우설계에 있었으며, 뒤리히 연방공과대학 건축과(ETH Zurich)를 졸업했다. 뒤리히에 있는 설계사무소 Duerig AG와 Burkhalter Sumi에 근무했으며 현재 스위스건축사협회(SIA) 정회원이며, Baumschlager Eberle에 있으면서 다수에 국제현상설계에 당선된 바 있으며 프로젝트 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동시에 김은호와 유럽공개현상설계 당선을 계기로 스위스

생갈렌(St.Gallen)에서 kimlim architekten를 설립해 공동운영하고 있다

목 차

1. 스위스의 건축현상설계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of Switzerland

2. 건축사를 위한 업무 및 보수규정(SIA102) 분석을 통한 건축사의 역할 Regulation governing architects' services and fees (sia102) by analyzing the role of architects

스위스에서 건축현상설계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전통적이며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 스위스건축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상설계는 갓 학교를 졸업한 젊은 건축가의 실습의 터이며, 기성건축가의 계속되는 건축실현의 장이다.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젊은 건축가는 자신의 사무실을 가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건축현상설계에 관한 세부지침은 스위스건축사협회에 의해 1877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공공건축의 실제적인 발주방법으로 스위스 건축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나의 건축물은 건축주와 건축가를 비롯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완성이 되는데 그 건축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시대와 지역에 따라 건축사의 역할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의 전통적인 건축용역계약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그리고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이 아닌 건축주와 건축사의 하나의 계약으로 건축물이 완성이 된다. 건축사는 건축업무 전반의 총책임자로서 우리나라처럼 건축설계 후 공사 감리업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공사시공 그리고 준공까지 건축업무전반에 막중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업무과정을 통해 건축가의 기본 설계개념을 건축물의 완성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다.

건축사는 건축디자인 능력과 더불어 건축업무 전반에 걸친 총책임자로서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은 다른 예술작업과는 달리 구체적인 작업이기에 종이 위에 그려진 건축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땅 위에 사용자들을 위해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스위스 건축사의 역할은 건축사를 위한 업무와 보수규정(SIA 102)에 명시된 건축업무진행과정과 각 단계별 건축용역비에 의해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본 연재는 스위스의 공공건축발주방법인 건축현상설계가 어떤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건축사를 위한 업무와 보수규정(SIA 102)분석을 통해 스위스의 건축계약형태와 건축사의 건축업무수행단계 및 건축사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모색하고자 한다.

I. 스위스의 건축 현상설계

1.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of Switzerland

스위스에서 건축현상설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공공건물과 대규모 일반 프로젝트는 모두 현상설계에 의해 프로젝트를 발주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살아남기 힘들며 작은 규모라도 현상설계에 의해 프로젝트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축물의 질이 유지가 된다.

건축설계는 다른 일반 프로젝트와는 달리 단지 공사비 입찰만으로 건축사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공공프로젝트와 규모가 큰 일반프로젝트는 현상설계를 통해서 건축사를 선정한다. 발주자는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설계 안을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사비와 건축의 질이 보장된다. 건축사는 당선을 위해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야 하지만 당선이 되면 주어진 건축예산 범위 내에서 커다란 설계변경이 없이 원안을 계획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스위스 연방법으로 정한 스위스 공공건축의 발주방법인 건축현상설계의 중요내용과 실제 시행되는 현상설계의 내용을 알아보고 끊임 없이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의 건축현상설계제도의 비교 근거가 되어 더 성숙된 우리의 건축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공공프로젝트의 발주 - 건축현상설계를 통해서

1996년 개정된 공공프로젝트의 발주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는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 GATT/WTO 국가와 서비스영역을 완전 개방해 19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이후로 공공프로젝트는 더 이상 지방이나 스위스내에서의 경쟁이 아닌 GATT/WTO 국가에 완전히 개방해 현상설계를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하게 된다.

그 목적으로는 투명한 발주체계, 현상설계의 강화, 공공자금의 경제적인 이용 촉진, 공평한 공개경쟁에 의한 효율적인 발주 등이다.¹⁾

건축용역비가 250,000프랑(약 3억원)이 초과하면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공공 프로젝트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건축사를 선정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각 칸톤과 시에 따라 그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건축현상설계에 의해 건축사를 선정하게 된다. 건축현상설계는 스타건축가를 발굴하는 거창한 구호 아래서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에서만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진건축가에게까지도 기회를 부여해 가장 합리적인 설계 안을 얻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작은 도시의 조그만 공공시설도 정해진 용역비가 초과하면 현상설계의 의해 건

축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스위스연방정부는 공공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현상설계의 주요 사항에 큰 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칸톤이나 시는 그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다시 정하고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알맞은 발주형태를 선택한다. 발주자는 건축현상설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건축사와 엔지니어 협회에서 정한 건축현상설계의 규칙(SIA 142)²⁾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SIA 142는 연방법을 기본으로 그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 목적 (Zweck)
- 협회규정의 현상설계규칙과의 관계 (Verhältnis zu verbandsrechtlichen Wettbewerbsbestimmungen)
- 현상설계의 종류 (Wettbewerbsarten)
- 이용방법 (Anzuwendendes Verfahren)
- 현상설계의 가치 (Wettbewerbswert)
- 준비과정 (Vorbereitung)
- 현상설계의 공고 (Ausschreibung)
- 젊은 건축가 지원 (Nachwuchsförderung)
- 무기명 (Anonymität)
- 사전검사 (Vorprüfung)
- 심사위원 (Preisgericht)
- 심사위원의 과제 (Aufgaben des Preisgerichts)
- 수상내역 (Ragierung und Preise)
- 심사위원의 추천 (Empfehlung des Preisgerichts)
- 저작권 (Urheberrecht)
- 현상설계의 권한 (Ansprüche aus den Wettbewerben)
- 보상조치 (Abgeltungsmodalitäten)
- 출판 (Veröffentlichung)

위의 항목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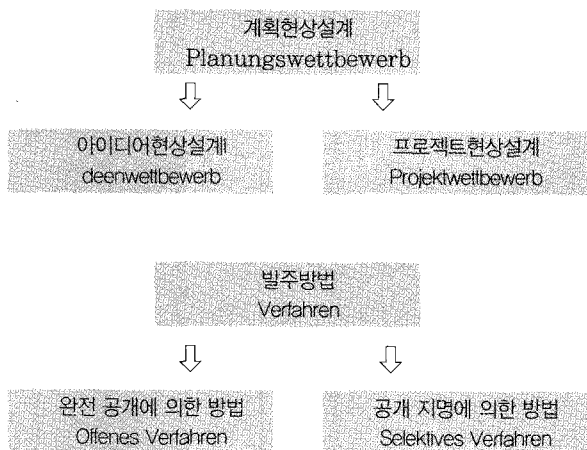
현상설계의 종류와 방법 (Wettbewerbsarten und Verfahren)

계획현상설계는 아이디어현상설계와 프로젝트현상설계로 나뉘어진다.

1) Bundesgesetz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Zweck Art. 1

2) SIA - schweizerischer ingenieur- und architektenverein 스위스건축사 및 엔지니어협회

3) 172.056.11 Verordnung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4. Kapitel Planungs- und Gesamtleistungswettbewerb



그리고 방식으로는 완전공개방식과 공개지명방식이 있다.

아이디어현상설계

이 방식은 프로젝트에 있어 기본 개념만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실제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의 초기단계로 요사이 국책사업에 공개현상설계를 실시하곤 하지만 스위스에선 그리 흔하지 않다. 스위스 건축가들은 건축이론이나 담론보다는 실제 건물을 짓는 것을 보다 중요시 하기 때문에, 수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상설계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아이디어 현상설계는 임상을 하게 되면 상당한 상금이 주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므로 참여율이 적을 수 밖에 없다.

프로젝트현상설계 / 완전 공개에 의한 방법

이 현상설계는 완전 공개방식으로 스위스 건축가 및 모든 GATT/WTO협정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만 공개현상설계 방식을 실시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개현상설계는 건축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며 이들은 이것을 통해 사무실을 설립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공모자가 많으므로 다양한 아이디어의 프로젝트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설계 안을 접할 수 있기에 건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다음 회에 언급하겠지만 스위스에선 건축사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 그리고 준공까지 전 프로세스에 걸쳐 총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개현상설계의 단점이라 할까 위험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경험이 적은 신진건축가가 당선일 때이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용역 범위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체 건축용역범위의 약 60% 즉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제한하고 공사예산관리, 시공, 감리는 경험이 풍부한 다른 전문업체(Bauleitung)와 팀을 이루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건물을 완성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신진건축가는 자신의 건축적인 개념과 의도

를 시공 감리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대부분이 전문업체(Bauleitung)는 건축가 소속의 양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 건축가의 일부 업무를 보조 대신하므로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는 한 최대한 건축가의 의도에 맞추어 공사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건축물은 건축가의 계획대로 지어질 수 있다.

이 공개현상설계는 최근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스위스에서 가장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현상설계 / 공개 지명에 의한 방법

이 방식의 현상설계는 2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차는 서류심사인데 공개현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스위스 건축가 및 GATT/WTO 협정국가 건축가면 지원을 할 수 있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A4 세 장 정도의 서류를 작성하고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두 세 작품의 실현된 건축물을 내용으로 하는 A3규격의 간단한 포토폴리올을 제출하면 발주기관장 및 건축가 등에 의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현상설계 참여자가 지명되며 이들만이 현상설계를 하는 방식이다. 선발 규정은 칸톤마다 그 우선순위가 다르지만 실현된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연관성, 대표건축사의 건축경험, 사무실 규모와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젊은 건축가는 이런 서류심사에서 기성건축가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칸톤 또는 각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고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연방법으로 지정한 젊은 건축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명자의 몇 퍼센트 정도는 실현된 프로젝트가 없고 경력을 갖추지 않아도 계획한 프로젝트가 우수한 젊은 건축가를 초대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적게는 5팀에서 약 20팀까지 참가자를 선정하며 전체상금은 평균 150,000프랑(약 2억원)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1등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약 30,000 또는 40,000프랑(약 3천 6백만 원/4천 8만 원) 정도의 상금과 건축용역이 주어지고 입상을 하는 경우 최소한 약 10,000프랑(1천 2백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비교적 제출물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간소하지만 대부분의 현상설계가 그러하듯이 스위스에서도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 만큼의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

젊은 건축가 지원 (Nachwuchsförderung)

공개현상설계에는 GATT/WTO 가입국가 건축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지명에 의한 현상설계는 1차에 공개서류전형으로 참여할 건축가를 선별하므로 실적이 적은 젊은 건축가는 참여기회가 거의 없으며 이에 범으로 참여자의 특정 비율을 젊은 건축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한다.

각 칸톤 및 시에서는 지명현상설계를 실시할 경우 젊은 건축가들의 지원을 따로 받는다. 젊은 건축가의 규정은 칸톤마다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사무실을 개업한 지 5년 이내 그리고 대표자의 나이에 제약을 둔다. 같은 조건의 젊은 건축가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약간 명을 지명하게 되는데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한 프로젝트에 지명된다.

무기명과 공정성 (Anonymität)

모든 현상설계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프로젝트마다 판넬에 참여자의 프로젝트명을 임의로 정해 기입하도록 하며 최종심사 후 따로 제출한 밀봉투에서 프로젝트명과 설계사무소의 이름을 확인한 후 당선자를 알 수 있다. 물론 부정행위로 당선이 되면 현상설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스위스에서는 사회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주자나 건축가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로 한 사무실에서 현상설계가 진행 중일 때 그 현상설계의 심사위원 중 잘 아는 지인이 다른 일로 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이 건축사는 그가 오기 전 모든 벽에 걸려있는 도면을 감추었고 모두들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터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하다니 말이다.

심사위원의 과제 (Aufgaben des Preisgerichts)

과반수 이상이 프로젝트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진 심사위원은 현상설계 프로그램을 검토, 공고를 허용하고 참가작품을 평가한다. 심사는 분명한 방식으로 평가하며 문서화 한다. 즉 심사위원은 프로젝트 시작부터 선정이 되어 공개되는데 프로젝트의 설계공모 개요를 검토 승인 후에 공고되며 중간에 참여자의 질의응답도 심사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공고된다. 심사위원은 발주자, 참여자와 함께 프로젝트 시작부터 심사까지 항상 같이 한다. 지금까지 시행된 성공적인 현상설계를 살펴보면 소신 있는 심사위원에 의해 프로젝트가 선발된 사례가 많다. 한 프로젝트는 이 세 그룹 즉 발주자, 심사위원 그리고 참여건축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

저작권과 출판 (Urheberrecht und Veröffentlichung)

현상설계 프로젝트의 저작권은 각각의 참여자에 있으며 수상한 작품들의 제출물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가진다.

발주자는 모든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고 입상한 프로젝트에 대해 각 프로젝트마다 A4 한 장 정도 분량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심사평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각 출판물에 출간하고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한다.

건축 및 엔지니어현상설계의 규칙(SIA 142)

1837년에 설립된 스위스건축사 및 엔지니어협회(SIA)는 1877년에 처음 건축현상설계방식의 원칙을 만들었으며 40년이 지난 후 1919년에 엔지니어현상설계의 규칙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 후 약 백 년에 걸쳐 현상설계의 규칙이 발전되어 왔다. 협회 내에는 현상설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각 시대의 필요와 현실에 맞게 대응 발전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다. 오랜 전통이 있고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듯이 현상설계규정 또한 명확하다. 사회적인 요구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건축계의 이슈로 발전시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건축 및 엔지니어 현상설계의 규칙(SIA 142)은 앞에서 설명한 연방법의 건축현상설계 지침을 세부적으로 다시 규정함으로써 연방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사항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건축가들이 만든 규정이니 만큼 건축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현상설계위원회에서는 1년에 약 100-120건 정도의 현상설계의 공모지침을 검토, 승인하고 있다.⁴⁾

실무에서 본 스위스 현상설계

연방법이나 지방법 그리고 건축현상설계의 규칙(SIA 142)에서는 현상설계의 주요지침을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자는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발주형태 및 제출도서 등 기타사항을 결정한다. 다음은 현재의 공공건축 발주경향에 대해 알아 본다.

완전공개 또는 공개지명

최근 10년간 스위스에서 시행되어 온 공공프로젝트 중 대부분의 공개현상설계는 유치원, 학교, 실내체육관, 장애인 및 노인주거시설과 미술관 등이다. 물론 이 건물들도 이용자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병원이나 연구실험실 등과 견주어 볼 때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그 규모 또한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현상설계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록 기능은 단순하지만 규모가 큰 고층사무실건물이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건물, 병원과 같은 건물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이런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명현상설계에 의해 건축가를 선정하며 신인 건축가는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모든 프로젝트에 같은 발주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출물의 요구사항 역시 같을 수 없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가는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현상설계에 참여 할 수 있다.

설계제출도서

건축가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건축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현상설계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서 제출시 디자인과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 참가에 소모되는 비용을

4) 실제로 더 많은 현상설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현상설계가 SIA의 검토 승인 하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참가자 및 발주자에게 당연한 이치다. 특히 스위스에선 임금 등 기본적인 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은 서로에게 이득이 없다는 것이 잘 인식되어 있다. SIA 142 규정에 발주자는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려고 언급되어 있고⁵⁾ 심사에 필요한 것 이외의 전문적 요구사항을 금하고 있다.

다음은 스위스 현상설계에서 요구하는 제출 목록이다

이는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설계 설명회 경우 다음과 같은 표현 양식이 요구되어져 심사위원이나 참가건축가에게 익숙해져 있다.

설계제출도서

- 도면 (A0 또는 A1)
- 배치도 1/500
- 평면도 1/200, 입면도 1/200, 주단면도 1/200
- (외벽단면상세도 1/50 또는 1/20)
- 모델: 배치모델 1/500
- 개념 설명 (판넬에 표현)
- 각실 면적표
- 면적계산(SIA 416에 의해)⁶⁾
- (구조, 설비개념)
- A3로 축소한 판넬 1부
- CD (PDF)
- 밀봉된 참가자명

배치도는 항상 1/500의 축척을 요구하며 이는 석고모델과 같은 축척으로 도시적인 관점을 심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면 중 하나이다. 외벽단면상세도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주로 요구된다.

스위스건축현상설계의 특징 중 하나가 석고모델인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하지만 스위스는 예외 없이 항상 이 배치모델(1/500)이 발주자에 의해 제공이 되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건축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주변과 같은 하얀 석고로 매스 자체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프로젝트를 같은 조건에서 도시적 관점 위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

석고모델은 현상설계 참가비 약 400프랑(48만 원)을 지불한 후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참가비는 돌려 받는다.

면적 및 체적은 스위스건축사협회에서 만든 방식(SIA 416)에 의해 계산하며 이 면적을 근거로 발주자는 건축공사비를 대략 책정할 수 있다. 발주자는 최종후보에 올라온 작품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건축공사비를 더 정확히 계산해 심사에 반영한다.

구조, 설비, 친환경설비 등의 개념은 특정 프로젝트에 요구되는데 개념만 표현하면 되는 정도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심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상설계는 기본계획 또는 그 이전의 단계

이기 때문에 전체적 개념과 디자인이 더 중요하며 건축설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설비 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선 일반적으로 설계설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작품의 개념을 판넬에 다 표현하길 권장한다.

심사위원은 판넬과 배치석고모델만으로 작품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상설계에 요구하는 설계설명서처럼 프로젝트디자인과 비교적 관계가 적은 소모적인 요소들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발주자마저도 노력한다. 과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응모자가 적어지며 발주자로서 좋은 작품을 얻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설계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1부만 요구하고 더 필요한 부수는 발주자가 복사를 하든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스위스에서 어떤 현상설계에 만약 약 50페이지 정도의 제본된 설계설명서 20부를 요구한다면 그에 합당한 설계용역비를 지불하기 전에는 참가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프로젝트의 발주방법인 건축현상설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랜 전통을 가지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협회 및 각 칸톤에서는 쥐리히 연방공대 건축학과 등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현상설계의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오늘날 현상설계가 스위스건축문화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우리와 비교해 프로젝트 규모나 발주방식에 차이가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르지만 현상설계가 건축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현상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자와 참가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모두가 당선자를 축하해 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상금만 내걸고 다른 모든 일은 참가자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응모자가 건축디자인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밀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현상설계는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념적인 작업을 요구해야 한다. 프로젝트마다 성격에 맞게 현상설계의 방식을 선택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공개현상설계로 실시해 많은 건축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지명현상설계를 할 경우에는 스위스에서처럼 제도적으로 신진건축가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만 현상설계가 일부 소수 집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건축인 전체를 위한 건축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Bundesgesetz über das öffentliche Beschaffungswesen vom 16. Dezember 1994 (Stand am 1. Juli 2010)
2. Ordnung SIA 142 Ordnung für Architektur und Ingenieurwettbewerbe, Ausgabe 1998
3. Ordnung SIA 416 Flächen und Volumen von Gebäude
4. Ordnung SIA 102 Ordnung für Leistungen und Honorare der Architektinnen und Architekten, Ausgabe 2003
5. Gesamtleitungen und Bauen, Paul Meyer-Meierling, Vdf Hochschulverlag AG an der ETH Zürich 1999
6. Drei Bücher über den Bauprozess, Sacha Menz, vdf Hochschulverlag AG an der ETH Zürich 2009

5) SIA 142 Art 13.1

6) SIA 416 Flächen und Volumen von Gebäude 건물의 면적 및 체적, 스위스건축사협회에서 만든 방식